



보건복지부

보건복지부



대한민국 대전환
한국판뉴딜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예외 적용 안내

1. 관련

- 가.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[별표1]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
- 나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, 제36조 및 제37조

2.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,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하여 병원급 이상의 감염병 관리기관은 지정된 기간에 한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병상기준의 예외로 적용하고자 하니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대상기관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감염병 전문병원
- 동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중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(거점전담병원, 감염병전담병원,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)

○ 허가사항

-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제2호 시설기준 비고 6에 따라, 섬지역 등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는 바,
- 상기 대상기관들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[별표1]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제2호 시설기준 (병상기준)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함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전국 시도, 전국보건소, 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, 대한요양병원협회,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주무관 **오혜인** 행정사무관 **김태경** 의료자원정책 **전결 2022.1.4.**
과장 **송영조**

협조자

시행 의료자원정책과-75 (2022. 1. 4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464 팩스번호 044-202-3925 / wisvolent312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